

2007년도 선박검사제도 주요 개정내용

(고시 제2007-24호, 2007. 4. 6)

1. 고속선 기준

- 고속선에 승선하는 무선통신 담당자의 자격 요건을 전파법 시행령 별표 12의 요건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정함(별표1/14.16.1)

2. 선박방화구조기준

- 갑판이 교차되는 곳 및 말단부의 방열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→ 교차되는 곳의 방열재의 연장부 길이 : 450mm이상(제9조, 별표7 관련)

3. 선박설비기준

- 채낚기어선 및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최대탑재인원 산정계수를 명확히 정함(제23조 관련) → 최대탑재인원 산정계수 : 0.55
- 선박의 상설보행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함(03 만재흡수선 협약 개정내용 수용)(제37조 관련)
-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 규정에서 정한 강도 이상의 예인 및 계류시설을 설치토록 함(제70조 관련)

4. 선박기관기준

- 산적화물선 및 단일화물창의 화물선에 설치되는 침수경보장치 성능기준 신설(제185조 관련)

5. 선박구획기준

- 고정식가압수분무장치가 설치된 격벽갑판하에 있어서의 배수 및 드레인 시설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함(제59조 관련)

6. 강선의선체구조기준

- 로로여객선의 램프가 선수격벽의 연장부에 설치된 경우에도 풍우밀로 하도록 명확히 함(제225조제2호 관련)

7. 선박만재흡수선기준

- 고속선기준에 적합한 고속선에 대해서는 선박만재흡수선기준 적용대상에 추가(제4조 제4항 관련)

8. 선박소방설비기준

- 증기공급용보일러에 의하여 생산된 증기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(제15조의2 관련)
- 중팽창 포말의 정의를 명확히 함
 - 중팽창포말이란 팽창률이 50배로부터 150

배까지의 범위의 것을 말한다.(제20조제12호 관련)

※ 시행일 : 2007. 5. 6부터 시행(강선의선체 구조기준 및 만재흡수선기준 개정내용은 2007. 4. 6부터 시행)